[별표 1]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

1.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

- 경미한 행위허가는 행정기관 장에 위임 (영 제28조)
-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: 보호물,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·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(법 제17조제1항제1호)

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
(사업시행자) *법 제17조, 영 제27조
규칙 별지 제4호서식

↓

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접수
(관할 행정기관의 장) *영 제27조

↓

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진달
(관할 행정기관의장 → 국가유산청장 및 시·도지사)
*영 제27조

↓

허가신청서 접수 관계전문가 검토
필요 시 현지조사
(국가유산청장) *법 제18조, 영 제30조

↓

국가유산위원회 심의
(국가유산청장) *국가유산기본법 제9조

↓

허가여부 등 행정처분 사항 통보
(국가유산청장→ 관할 행정기관의 장)
*영 제29조

↓

허가여부 등 행정처분 사항 접수 및 통지
(관할 행정기관의 장 → 사업시행자)

↓

사업시행 및 착수, 완료 신고서 제출
(사업시행자) *법 제21조, 영 제31조